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

보



www.namwon.go.kr

제4호

2018. 1. 19(금)

고시

기관의 장

제4호

선

람

○남원시	고시	제2018- 6호	남원시 활기찬 농존프로젝트 시범사업 시행계획 고시	1
○남원시	고시	제2018- 9호	사도개설 허가내용 고시	3

공고

○남원시	공고	제2018-	50호	「남원시	화물자동차	공영차고지	관리 및	운영 조리	폐」제정	조례(안)	입법예고	 	- 4
○남원시	공고	제2018-	65호	공인 등	록 공고							 	18
○남원시	공고	제2018-	79호	급경사지	붕괴위험지]역 지정에	따른 주덕	민의견수렴	공고 -			 	19

회					
람					

발행 : 남원시 / 편집 : 홍보전산과 ☎(063)620-6032

남원시 고시 제 2018 - 6호

남원시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시행계획 고시

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『농어촌정비법』 제58조 및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. 01. 18.

남 원 시 장

- 1. 사업의 명칭 :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
- 2. 사업의 목적

"남원 이너뷰티 식품산업 육성"을 통한 특화된 이너뷰티 식품산업 브랜드 창출과 새로운 고부가가치 육성으로 농촌지역 소득증대,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하여 농촌지역 활력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

- 3. 계획의 개요
 - 가. 사업위치 : 남원시 주천면 용담리(이너뷰티 식품가공시설GMP) 및 동부권 일원
 - 나. 사 업 비 : 8,000백만원(국 5,600, 시 2,400)
 - 다. 사업기간 : 2016년~2018년(3년간)
 - 라. 사업시행자 : 남원시장
 - 마. 주요 사업내용
 - · 이너뷰티 식품가공시설(GMP) 사업/ 이너뷰티 창업지원사업/ 이너뷰티 신(新)소농 삶터조성/ 이너뷰티 식품산업 박람회
 -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농정과에 비치된 시행계획서 열람가능(남원시 농정과 농촌개발계 ☎063-620-6394)

🔲 시행계획 수립 세부사업 내용

1. 세부사업 총괄표

○ 총 사업비 : 8,000백만원(국5,600, 시2,400, 자부담240)

O 이너뷰티식품 가공시설 조성 : 3,900백만원(국2,730, 시1,170)

O 이너뷰티식품 창업지원 : 2,759백만원(국1,931.3, 시827.7, 자부담 240)

O 이너뷰티 신(新)소농 삶터조성 : 300백만원(국210, 시90)

O 이너뷰티 식품산업 박람회 : 165백만원(국115.5, 시49.5)

○ 부대비용 : 876백만원(국비613.2, 시262.8)

2. 남원시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총괄표

사업명		ग्री मे भ्रो ले त्व		사업비(백만원)					
^የਬਰ		세부사업명	합 계	국 비	지방비	자부담	사업기간		
이너뷰티식품	H/W	이너뷰티식품 가공시설 조성	3,900.0	2,730.0	1,170.0	-	' 17		
가공시설 조성		소 계	3,900.0	2,730.0	1,170.0	-	_		
	H/W	이너뷰티식품 창업지원	900.0	630.0	270.0	180.0	'17~'18		
	H/W 이너뷰티식품 현대화사업		300.0	210.0	90.0	60.0	' 18		
	S/W 창업지원 교육 및 컨설팅		160.0	112.0	48.0	_	'17~'18		
이너뷰티식품	S/W 이너뷰티식품 제품개발		550.0	385.0	165.0	_	'18		
창업지원	S/W	S/W 브랜드화 지원		105.0	45.0	-	'17~'18		
	S/W	S/W 홍보마케팅		346.5	148.5	_	'18		
	S/W	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	204.0	142.8	61.2	_	'17~'18		
		소 계	2,759.0	1,931.3	827.7	240.0	-		
이너뷰티	H/W	삶터 기반조성 지원	200.0	140.0	60.0	_	'18		
신(新)소농	H/W	전기 및 상하수도 정비 지원	100.0	70.0	30.0	-	'17~'18		
삶터조성 사업		소 계	300.0	210.0	90.0	_	_		
	S/W	국내 식품산업 박람회 참가지원	105.0	73.5	31.5	_	' 18		
이너뷰티 식품산업 박람회	S/W	국외 식품산업 박람회 참가지원	60.0	42.0	18.0	_	' 18		
		소 계	165.0	115.5	49.5	-	_		
		부대비용	876.0	613.2	262.8	-	'16~'18		
		총 합계	8,000.0	5,600.0	2,400.0	240.0	-		

남원시청 고시 제2018 - 9호

사도개설 허가내용 고시

「사도법」 제4조에 의하여 사도개설 허가가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- 1. 사업위치 : 남원시 사매면 대신리 산45-7번지 외 1필지
- 2. 사업목적 :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진·출입로를 위한 사도 개설
- 3. 공사개요 : 연장 L=568.0m, 폭 B=4.0m (Con`c 포장)
- 4. 공사시행기간 : 2018. 01. ~ 2018. 06.

시

- 5. 공사실시방법 : 토목공사 일반시방서에 의거 실시
- 6. 허가기관 : 남원시청
- 7. 허가년월일 : 2018. 01. 16.
- 8. 피허가자의 주소·성명: 박옥심(전주시 덕진구 어은골3길 15)
- 9. 기타사항: 사도설치 허가사항 조건에 준함

2018년 01월 19일

남원시장

남원시 공고 제2018 - 50호

「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「행정절차법」제41 조 및「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01월 10일

남 원 시 장

'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, 제정 조례(안)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○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심지 내 주차난을 해소하며,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한 화 물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O 조례의 목적, 시설의 명칭 및 위치 규정
- 화물공영차고지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
 - 시장은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, 수탁자가 요금을 징수거나 변경하고

자 하는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(안 제3조, 14조)

- O 공영차고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
 - 운영의 위탁 :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협회 또는 화물운송사 업과 관련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 (안 제8조)
 - 선정방법 :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나, 경우에 참가자를 지명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.(안 제9조)

3. 의견제출

- O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 : 교통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O 의견 제출사항
 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)
 - 나. 의견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O 의견 제출할 곳 : 남원시장(참조 : 교통과장)
 - 우편번호 : 55738
 - 주 소 : 남원시 시청로 60(도통동) 남원시청 교통과
- O 의견 제출 방법 : 서면, 팩스(063-620-6718), 직접 방문, 컴퓨터 통신

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

4. 기 타

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교통과(☎063-620-656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				의	견	제	출	서					
1.	의견제출	- 목=	루	남원시	화물	자동차	공영?	차고지	관리	및	운영	조례	
9	제출자	성명](명칭)										
۷.	세풀사	주	소										
3.	의 견												
4.	기 타	-											

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17년 월 일

의견서 제출인 주 소:

성 명: (서명 또는 인)

전 화:

시

남원시장 귀하

비고

- 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
- 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-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보

의안 번호

제출년월일: 2017. . .

제 출 자:남원시장

제안설명자:교통과장

1. 제정이유

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심지 내 주차난을 해소하며,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한 화물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,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함 (안 제1조, 안 제2조)

나. 공영차고지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3조~안 제7조)

다. 공영차고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8조~ 안 제1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(예정)

- 기 간: 2017. . ~ 2017. . (20일간)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남원시 조례 제 호

시

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45조에 따라 남원시가 설치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명칭 및 위치) 남원시(이하 "시"라 한다)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(이하 "공영차고지"라 한다)는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75번지 일원에 둔다.

제2장 공영차고지 시설물의 이용

- 제3조(이용신청)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려는 자는 남원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.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. 다만, 일별·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- 제4조(이용료)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이용료(이하 "이용료"라 한다)를 받을 수 있으며,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.
 - ② 이용료는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

일별 · 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.

시

- ③ 이용자가 년 또는 월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원하는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영차고지 이용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.
- 제5조(이용료 반환 등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할계산하여 이용료의 나머지를 반환할 수 있다.
 - 1. 천재지변,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
 - 2.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때
 - 3. 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
 -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 - 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: 전액
 - 2. 화물운송관련 단체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 : 전액
 - 3. 그 밖에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: 50퍼 센트
- 제6조(이용자의 의무)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그 시설물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이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
 - ③ 이용자는 시설 등의 파손, 장애 또는 그 위험성이 있는 상태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이용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

제7조(이용자의 행위제한)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

- 1.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
- 2.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
- 3.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
- 4. 「소방법」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

시

- 5. 환경관련법(「대기환경보존법」,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」,「소음·진동관리법」,「폐기물관리법」)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·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
- 6.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

제3장 공영차고지 위탁운영

- 제8조(위탁)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 - 1.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48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
 - 2.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50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
 - 3.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제9조의18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
 - 4. 「민법」또는「상법」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그 설립 목적이 화물운수와 관련된 법인

시

- 5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그 설립 목적이 화물운 수사업과 관련되어 있으며, 주 사무소를 남원시에 둔 법인
- 제9조(수탁자의 선정)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자격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수 있다. 다만, 수탁자가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인 경우에는 시장이 선정할 수 있다.
- 제10조(신청 및 구비서류) 제8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 - 1. 신청서 1부
 - 2. 법인(단체) 등기부 등본 1부
 - 3. 임원 및 자산현황 1부
 - 4. 법인(단체)정관 1부
 - 5.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
 - 6. 공영차고지 운영계획서 1부
 - 7. 해당 연도 법인(단체)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
 - ②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 관리·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인허가가 필 요한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11조(심사기준) 수탁대상은 심사할 때에는 법인 설립목적 적합성, 운송서비스를 위한 방안, 사업계획의 적정성, 재정능력, 공영차고지 관련 사업실적 등

제4호

- 제12조(협약체결) ①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의 의무, 위탁내용, 위탁기간, 재정부담 능력, 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문서로서체결하고, 협약서는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위탁기간의 갱신) ① 위탁기간은 위·수탁 관리협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경우에는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이상 갱신할 수 있다. 이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 - ③ 수탁자는 운영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갱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여부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이용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관리에 있어 관계법령 및 위·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 - ③ 시장은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위탁재산의 관리현황 자료를 수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협조해야 한다.
 - ④ 수탁자는 제4조, 제5조에 따라 이용료의 징수 및 반환규정 등을 준용할

수 있으며,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제15조(수탁자의 행위제한)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.
 - 1.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

시

- 2. 수탁권한의 양도나 전대하는 행위
- 3. 시장의 승인 없이 새로운 시설의 설치 및 구조변경 행위
- 제16조(위탁의 취소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.
 - 1. 수탁자가 위ㆍ수탁 관리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
 - 2. 수탁자가 공영차고지 시설을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하였을 경우
 - 3. 공익상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
 - 4. 그 밖에 공익상 이유로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문서를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제17조(지도감독)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한다.
 - ② 시장은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.
- 제18조(관리 지원)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9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,「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,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등을 준용한다.

보

제2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시

[별표]

차고지 이용 요금표(제4조제1항 관련)

구분	2시간	1일	정 7	기권
l 판	미만	요금	월	년
승용차 및 5톤 이하 화물자동차	무료	1,000원	20,000원	220,000원
5톤 초과 화물자동차	무료	2,000원	30,000원	330,000원

비고

- 1. 차량구분은 차량등록증의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한다.
- 2. 「남원시 주차장 조례」에 따라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이용 요금을 감면한다.
- 3. 입차 후 2시간 내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하고, 2시간부터 24시간 이내는 1일 요금을 적용한다.
- 4. 1일 주차는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온 시각으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. 24시간 초과 시마다 1일 요금을 추가 납부한다.
- 5. 1일 운영 시간에 징수하는 1회 주차 요금은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.
- 6. 정기권 이용자에 대하여 화물차량 1대당 등록 승용차 1대의 요금을 면제한다.

제4호

(별지 제1호 서식)

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(변경, 연장) 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		
	성명(법인명	및 대표자 성명)	생년월일(법인등록	록번호)
신청인	전화번호		핸드폰	
	주 소			
-1-1-1-1	차량번호		색 상	
차량현황	차 종		세부용도	
이용기간		년 월 일 ~	년 월	일 (개월)
		·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! 연장)을 신청합니다.	_	도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 면 월 일
			신청인	(서명 또는 인)
남원시장	귀하			
신청인(대 <u>.</u> 제출서		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기 차량등록증 사본 1부	-증 사본 1부	
		처리	절차	
신청서 작		접 수 ─▶ 검	토 —▶ 결 재	─-▶ 등록승인

(별지 제2호 서식)

제4호

남원시 제 호

차고지 이용증명서

□ 성 명:

□ 주 소:

□ 생년월일:

□ 차량번호:

□ 이용면적 :

□ 이용기간:

□ 차 고 지 : 남원시 화물공영차고지

상기 차량에 대해 차고지 이용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남원시 화물공영차고지 관리(수탁)자 000

남원시공고 제2018-65호

시

공인 등록 공고

남원시 공인 조례 제7조의2(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) 규정에 의한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9조(공고)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1월

남 원 시



□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[관광시설사업소]

 공인 등록사유: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(시설사업소→관광시설사업소)으로 관련 시스템(온나라) 전자이미지 재등록

(• 입장료 수입관리를 위한 카드가맹점 전자우편물 발송업무)

2. 공인 등 록 일 : 2018. 1. 12.

관련 조 례 : 남원시 공인조례 제7조의2

4. 등록 공인명 및 인영

구 분 (폐기/등록)	공인명	규격 (cm)	형태	인영	관리부서
등록	남 원 시 관 광 시 설 사 업 소 장 인	2.1cm×2.1cm 정방형	전 자이미지	H원인전 당인설턴 압도점트	관광시설 사업소

남원시 공고 제2018- 79호

시

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공고

『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』제6조(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(붕괴위험지역 지정·고시)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『행정절차법』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.

2018년 01월 19일

남 워 시 장

1.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될 범위 등

지구명	위치		지정	내용		관리자	ग्रास १६०	비고
시구경 	취시	유형	등급	연장(m)	높이(m)	선디자	지정 사유	4144
금지서매 지구	전북 남원시 금지면 서매리 481번지 일원	붕괴위험	D	270	9	남원시장	붕괴위험지역 정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	

- 2.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(『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』 제10조 제1항)
 -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(管路)의 설치, 철탑의 설치, 도로·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
 -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·개축하는 행위
 - 옹벽·축대 및 측구(側溝) 등을 변경하는 행위
 -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
 -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- 단, 인·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관리기관(안전재난과)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,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 하여 사전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3.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: 붕괴위험지역 중장기 계획에 반영 보수·보강 추진
- 4. 의견수렴기간 : 2018. 01. 19(금.) ~ 02. 07(수) 20일간

시

- 5. 공고방법 : 남원시청 홈페이지 및 읍·면·동사무소 게시판
- 6. 관련근거
 -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(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)
 -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(행정예고의 대상)
- 7. 의견제출 :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원시청 안전재난과로 방문,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
 - · 우편 : (우)590-701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(남원시청 안전재난과)
 - · 전화 : 063) 620-6963 · 팩스 : 063) 620-6747
- 붙임 1. 주민의견 제출서(서식) 1부.
 - 2. 편입토지조서 1부.
 - 3.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. 끝.

		주 민	의 견	제 출	서		
공 고 명	급경사지	붕괴위험기	지역 지정0	세 따른 주면	빈의견수렴 공	공고	
의견 제출자	성 명 (개인/단체)				생년월일		
의선 제출자	주 소				전화번호		
지 구 명			검토의	견(의견제출	를 내용)		
금지서매							
급경사지	붕괴위험지	역 지정과	관련하여	위와 같이	의견을 제출	합니다.	
			제출	2018년 ^돌 자	월 (서양	일 명 또는 인)	
남원시]장 귀하						

□ 편입토지조서

				개요				
일련 번호	위치	면적 지적	지정	유형	등급	지정사유	소유자	비고
		면적	면적					
계	16필지	10,008	7,350					
1	금지면 서매리 459	241	45	붕괴위험	D	사면붕괴위험	신동*	
2	금지면 서매리 483	377	377	붕괴위험	D	사면붕괴위험	김선*	
3	금지면 서매리 484	228	228	붕괴위험	D	사면붕괴위험	공경*	
4	금지면 서매리 485	370	370	붕괴위험	D	사면붕괴위험	공성*	
5	금지면 서매리 486	383	383	붕괴위험	D	사면붕괴위험	최옥*	
6	금지면 서매리 487	585	585	붕괴위험	D	사면붕괴위험	박명*	
7	금지면 서매리 488	939	939	붕괴위험	D	사면붕괴위험	나강*	
8	금지면 서매리 502	393	393	붕괴위험	D	사면붕괴위험	지강*	
9	금지면 서매리 503	640	640	붕괴위험	D	사면붕괴위험	장덕*	
10	금지면 서매리 504	774	774	붕괴위험	D	사면붕괴위험	공삼*	
11	금지면 서매리 505	536	536	붕괴위험	D	사면붕괴위험	나길*	
12	금지면 서매리 506	691	691	붕괴위험	D	사면붕괴위험	이명*	
13	금지면 서매리 522	198	198	붕괴위험	D	사면붕괴위험	하은*	
14	금지면 서매리 520	860	860	붕괴위험	D	사면붕괴위험	이정*	
15	금지면 서매리 547	281	281	붕괴위험	D	사면붕괴위험	김병*	
16	금지면 서매리 1222-0000	2,512	51	붕괴위험	D	사면붕괴위험	국(건설부)	

※ 추후 필지 및 지정면적 변경될 수 있음

□ 위치도 및 현황사진

이 위치도



○ 현황사진



